



202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포스코A&C는 2007년 윤리규범 제정 이후, 윤리경영 원칙과 함께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 운영과 교육을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올해 대·중소기업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 조성 and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 질서 정립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회사에서는 하도급거래시 그 어느 때보다 임직원 여러분의 공정거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및 참여가 필요하기에, 아래와 같이 두가지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하도급거래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실행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도급법에서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서면교부',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바라며, 경쟁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준수를 기본으로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자율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22년부터는 전 임직원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기반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에 활용 가능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발간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자율준수협의회 운영을 통해 유관 부서간 원활한 지원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준수 활동이 보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시민으로서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윤석원입니다.

올해는 포스코 그룹의 균형 성장을 목표로,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새로운 출발의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의 기업 가치평가는, 단순한 경영실적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 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그룹 차원의 ESG
경영을 선도함으로써, 기업시민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매진
해 나갈 예정이며, 포스코A&C도 그룹의 기조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의 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A&C는 2009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을 도입 및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법 위반을 예방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미흡, 제도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법 위반 Risk가 아직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하도급 거래의 전반
을 점검하고,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준수편람은 하도급거래 관련 업무수행 시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과 업무시 유의사항, 사례,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의 의견과 최신 사례 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 및 준법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임직원들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연혁

구분	시 기	주요변동	주 관
최초 발간	2010.12	대규모기업집단 부문 발간	포스코 그룹 공동
1차 개정	2011.06	하도급법 부문 발간	포스코 A&C
2차 개정	2012.09	포스코그룹 통합편람 발간	포스코 그룹 공동
3차 개정	2013.05	하도급부문 개정	포스코 그룹 공동
4차 개정	2013.10	구매부문 개정	포스코 그룹 공동
5차 개정	2014.01	대기업집단 부문 개정	포스코 그룹 공동
6차 개정	2014.07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 추가	포스코 그룹 공동
7차 개정	2015.10	구매, 마케팅 부문 발간	포스코 그룹 공동
8차 개정	2016.10	대기업집단 부문 발간	포스코 그룹 공동
9차 개정	2018.10	법 개정사항, 최신판례 등 반영	포스코 그룹 공동
10차 개정 (금차)	2022.08	1. 최신 법 개정사항 반영 2. 사례 및 판례 추가 3. 사용 편리성 개선 - 삽화 추가로 시인성 강화 - CP 운영 지침 수록	포스코 A&C

CP 운영실적

자율준수 프로그램 추진경과

-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교육·감독 체계 등 내부준법 시스템입니다.

포스코A&C는 2009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월	내 용
2009. 04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2009. 10	Compliance Program 도입
2010. 01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2010. 12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작(그룹 공통)
2011. 0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2011. 01	공정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2011. 04	공정거래 전담부서 변경(경영지원실→정도경영실)
2011. 06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A&C 전용)
2011. 12	CP등급평가(중소·중견기업 기준) BBB등급 획득
2012. 11	CP등급평가(중소·중견기업 기준) A등급 획득
2014. 12	CP등급평가(중소·중견기업 기준) A등급 획득
2015. 07	상상통행 신고센터 구축
2016. 01	클린포스코시스템 도입
2016. 12	CP등급평가(중소·중견기업 기준) A등급 해당 점수 획득
2017. 11	2017 건설협력증진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2022. 02	신고·상담 / 제도 개선센터 개편(舊 상상통행 신고센터)
2022. 0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

Contents

- CEO Message / 003
- 자율준수관리자-발간사 / 005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 연혁 / 006
- CP 운영실적 / 007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I.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 013

1. 의의 / 013
2. 필요성 / 013

II. CP 8대 핵심 구성요소 / 014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014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014
3.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014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과 활용 / 015
5.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015
6.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감시체계 구축 / 015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015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015

III. CP 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 016

1. 인센티브 제도의 의의 / 016
2. 등급별 인센티브 / 016
3. 인센티브 적용 제외 기준 / 017

02

공정거래 관련 법규



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021

1. 목적 및 입법취지 / 021
2. 특성 / 022
 - 1) 민법 내지 상법의 특별법
 - 2)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 하도급법은 국내법
3. 적용범위 / 023
 - 1) 건설위탁
 - 2) 제조위탁
 - 3) 용역위탁
 - 4) 적용대상 사업자
 - 5) 적용제외대상 중소기업
 - 6) 법 적용대상 기간
4. 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 027
5. 원사업자 의무사항 / 030
 - 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 2) 선금금 지급 의무
 -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4)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5)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의무
6. 원사업자 금지사항 / 066
 -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2)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3)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4) 부당 반품의 금지
 -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6)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 7) 부당한 특약의 금지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00

1. 공정거래법의 역할 / 100
2.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 100
 - 1) 부당한 지원행위
 - 2) 불공정거래행위
 - 3)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03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
- I. 개요 / 109
 - II. 심판기능으로서의 공정위 / 109
 - III. 심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 110
 - IV. 사건처리 절차 / 111
 - V.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 113
 - VI. 불복절차 / 114
 - VII. 사전심사 청구제도 / 115
 - VIII. 동의명령제도 / 115

04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 I. 하도급법 / 119
 - II. 공정거래법 / 122
(부당한 지원 및 불공정거래행위)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 II. CP 8대 핵심 구성요소
- III. CP 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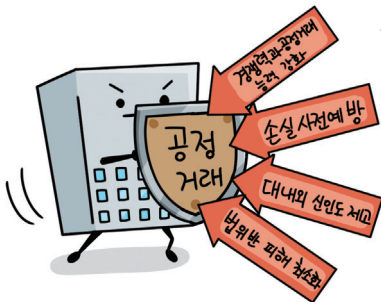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의의

- 1)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기업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CP의 핵심이다.

2. 필요성

- 1)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
- 2)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예방
 - 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 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이러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3) 대내외 신인도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투명 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 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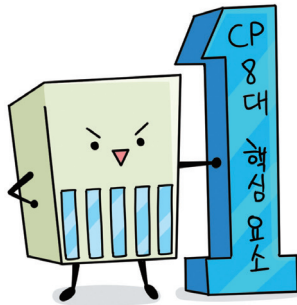
CP 8대 핵심 구성요소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 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 문서로써 조직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1) 경쟁법 자율준수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 2)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물적 자원이 제공되는 등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최고의 사결정기구에서 최고경영자가 아닌 임원을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며, 이러한 사실을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과 활용

- 회사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하고,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특히 최신 공정거래 관련법 내용과 심결례 변경사항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해야 한다.

5.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최고경영자 및 임원(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 위반 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이고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 향상 및 법 위반을 최소화해야 한다.

6.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감시체계 구축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법 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내부감독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여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가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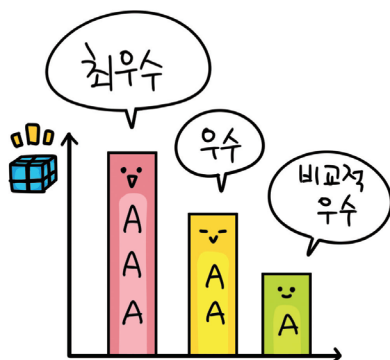
CP 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1. 인센티브 제도의 의의

-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경쟁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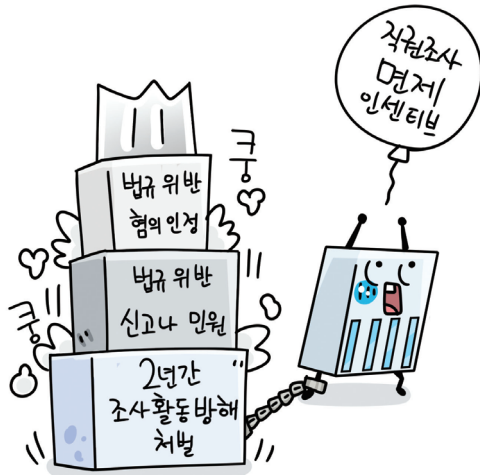
2. 등급별 인센티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v.유인

CP등급	직권조사 면제	위반사항 공표명령	등급평가증 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AAA(최우수)	2년	면제	○	2년 연속 취득 시
AA(우수)	1년 6개월	감경	○	2년 연속 취득 시
A(비교적 우수)	1년	감경	○	-
B(보통)	-	-	-	-
C(미흡)	-	-	-	-
D(매우미흡)	-	-	-	-



3. 인센티브 적용 제외 기준

- 1)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 적용 제외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v. 유인 2.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나. 적용제외 사유
 - ①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 ②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 ③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등급평가증 회수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v. 유인 3. 등급평가증 수여 나. 등급평가증 반납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등급조정에 따라 B등급 이하로 하향조정된 경우



02

공정거래 관련 법규

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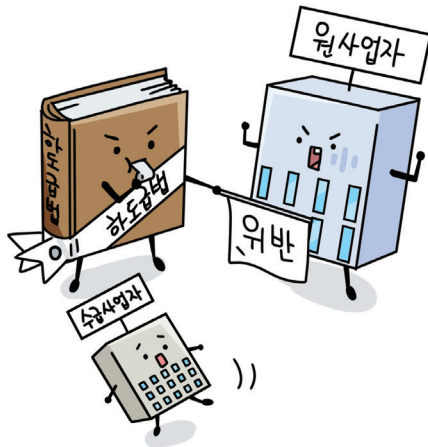
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 하도급법,
이하 ‘하도급법’)

1. 목적 및 입법취지

- 1)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2. 특성

1) 민법 내지 상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2)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우선 적용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건설산업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과 중복 적용가능하다. 단, 위 법 내용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

4) 「하도급법」은 국내법

-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가진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적용범위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조 ①항」

1) 건설위탁 「법 제2조 ⑨항」

-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자

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③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모델하우스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건설위탁이 아닌 경우

- 무면허건설업자와의 거래(경미한 공사는 제외)
- 전기공사업 면허사업자가 해당 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자와 거래
- 건설장비임대차(포크레인 등)

2) 제조위탁「법 제2조 ⑥항」

- 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가. 물품의 제조 나. 물품의 판매 다. 물품의 수리 라. 건설
 - ※ 그 業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 ② 사업자가 건설을 業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제조위탁에 해당될 수 있음
 -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 : 레미콘, 아스콘 등
 - 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 : 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 라. 규격·표준화된 자재라도 특별히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
 - 마.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됨
- ③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業으로 하는 경우
 - 가.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 포함).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
 -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 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
 - 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 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 마.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임) 가공
 - ※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간주

3) 용역위탁「법 제2조 ⑪항」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

①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가. 정보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조합된 것

나.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다.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체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디자인, 상표, 설계도면 등)

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성과물

② 역무의 공급위탁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설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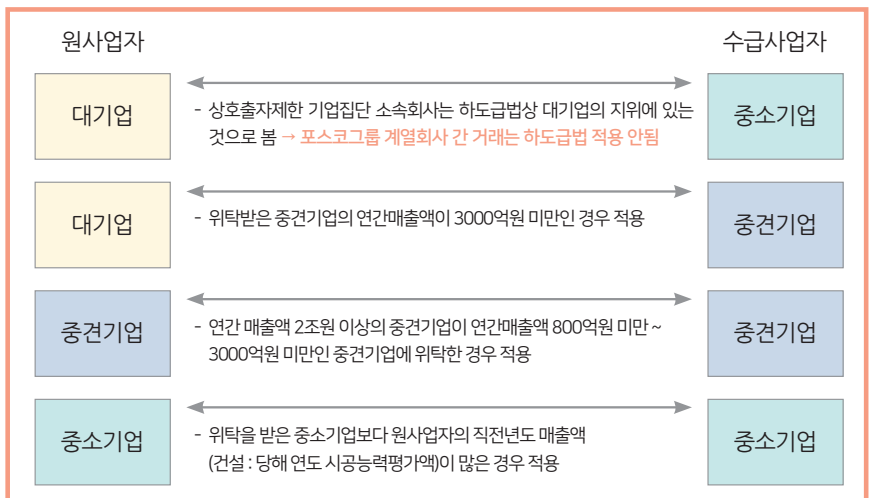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 하는 활동

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

라.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 장소, 경비 등의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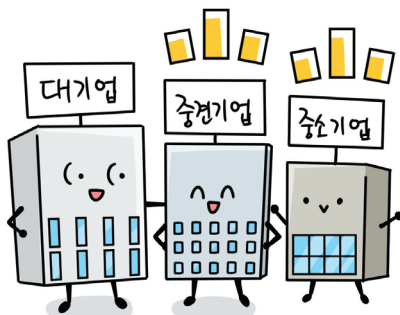
마.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4) 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 ②항, ③항」



① 중소기업 정의

- 가. 제조·서비스 업종별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4백억원 이하 ~ 1천5백억원 이하
 나. 건설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1천억원 이하



② 중견기업 정의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
- ※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 (1)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이하 '대기업')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2)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5) 적용제외대상 중소기업「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④항」

- 연간매출액(시공능력 평가액)이 일정규모 미만 중소기업은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위탁 유형	연간 매출액 (건설위탁 : 시공능력평가액)
용역위탁	10억원 미만
제조·수리위탁	30억원 미만
건설위탁	45억원 미만

6) 법 적용대상 기간「법 제23조」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단,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 당사자가 분쟁 조정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하다.

※ 거래종료일

- (1)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2)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3) 건설위탁 :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4)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4. 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구 분	제 재 내 용
행정적 제재	1) 시정조치 : 시정명령, 시정권고, 특약 삭제나 수정 등 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3)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법 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기술유평 행위는 최대 5억원까지 부과) 4)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 (경고 이상의 조치 3회 이상 사업자 누산점수 4점 초과) 5)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및 영업정지(3년간 벌점 10점 초과)
행정질서벌 (과태료)	1) 출석처분 위반, 허위 자료 제출 :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2) 조사 방해, 거부 : 사업자 2억원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3) 수급사업자 자료 제출 방해 : 사업자 5천만원 이하, 개인 500만원 이하 4) 서면실태조사 : 사업자 500만원 이하
형사적 제재	1)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2)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② 부당경영간섭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자 3)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4) 고발 (법위반 3회 이상 및 벌점 4점 초과) 5)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민사적 제재	- 손해배상 책임 :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 배상 책임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②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이나 인수거부 금지 ③ 부당반품 금지 ④ 감액 금지 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⑥ 보복조치 금지

벌점 부과기준

-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③항 [별표3] 2. 가.

부과기준		벌점
경 고	(서면실태조사)	0.25점
경 고	(신고 or 직권인지)	0.5점
시정권고, 자진시정 & 재발방지명령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과징금	(부당한 대금결정, ,감액금지, 보복조치금지, 기술자료 요구금지)	2.6점
고 발		3.0점
고 발	(부당한 대금결정, ,감액금지, 보복조치금지, 기술자료 요구금지)	5.1점

벌점 경감기준

- 벌점의 경감은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③항 [별표3] 3. 가.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

유 형	경감 점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90% 이상 : 2점 70% 이상 ~ 90% 미만 : 1점
현금결제비율	100% 이상 : 1점 80% 이상 ~ 100% 미만 : 0.5점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등급	최우수 : 2점 우 수 : 1점
공정위 모범업체 선정	3점
협약평가결과 (동반성장협약, 평가 양호 이상)	최우수 : 3점 우 수 : 2점 양 호 : 1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활용 (대금 직접 지급)	50% 이상 : 1점 50% 미만 : 0.5점
수급사업자 피해 자발적 구제	(공정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5. 원사업자 의무사항

의무사항	유의 거래단계	내 용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제3조)	계약체결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관한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함
선급금 지급 의무 (제6조)	대금지급 단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때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 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함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제9조)	계약이행 단계	검사결과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대금지급 단계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의무 (제13조의2)	계약체결 단계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 여 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제16조)	대금지급 단계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 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때에는 그 추가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제16조의2)	대금지급 단계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공 급원가의 가격 변동,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납품시기 지연으로 관리비 등 의 비용이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 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① 서면의 발급 「법 제3조 ①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중요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가. 중요 기재사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가)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의 내용

나)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다)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라)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조정금액 등)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바) 「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서면의 발급시기 : 사전 발급

가)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나)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다)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라)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예외적으로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 가능 「법 제3조 ③항」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이 가능하나,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해당 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 하여야 함 「법 제3조 ④항」

다.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기본계약서(개별계약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주문서, 발주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VAN 또는 전산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면 발급을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목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 서면 교부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불 가 능	-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하여 기재하는 경우 - 제조·수리·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 발주처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으로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서면 미발급에 해당)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목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판단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 증거인멸을 의도로 하도급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경우 -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② 하도급계약 추정제「법 제3조 ⑤항, ⑥항」

- 원사업자가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가. 일정한 사항

- 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내용
- 나) 하도급대금
- 다)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 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 마)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나.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서명 날인 및 공인전자주소 이용시 인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함

- 가)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의 성립을 서면으로 확인, 향후 분쟁에 대비 가능
- 나)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의 불성립을 확인하고 작업중단, 하도급업체의 손해 예방 가능
- 다)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 추정, 추후 분쟁 발생시 소송 등을 통한 구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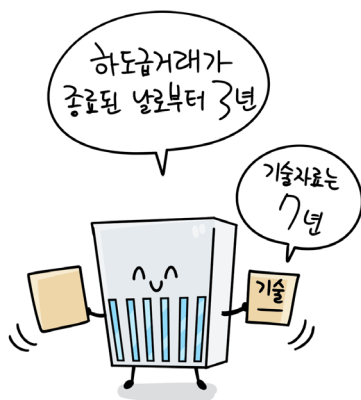


③ 서류의 보존「법 제3조 ⑨항」

가. 보존 서류「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 가) 제조 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량증명서
- 나)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
- 라)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록된 서류
- 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 바)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목적물의 물량, 감액금액 등을 기록한 서류
- 사)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
- 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자) 「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차)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 나. 보존기간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②항
-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단, 기술자료 제공 요구 서류는 7년간 보존)



다.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보존이 어려워 마이크로필름, 컴퓨터디스켓 등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
불 가 능	-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관계서류(검수관계, 반품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를 파기하는 경우 -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원본을 파기하는 경우

④ 사례 및 판례, FAQ

가. 사례

OO건설은 □□건설에게 위탁한「OOOO OO OOOO개발사업」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OO OOOO OOOO주변 부지조성공사」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종료에 따른 공기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경하도급계약 서면은 공사 착공 후에 교부한 사실이 있음

- 하도급법 제3조 ①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OO건설이 수급사업자인 □□건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하도급계약서 서면을 지연교부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①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함

OO서비스㈜는「OO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틀 인입 공사」일부를 OO건축에 건설위탁하면서 위탁서면을 공사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았으며, 공사 완료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OO건축이 하도급법 제3조 ⑤항에 따라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사업자인 OO서비스㈜는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음

- OO서비스㈜는 공사를 구두로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①항에 위반되며, OO건축이 위탁내용 및 하도급 대금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건축이 통지한 내용대로 건설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 설정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화성토건(주)에 시정명령(벌점 2.5점) 부과 (공정위 보도자료 '20.6.12)

- 외부 웬스공사 등을 추가 위탁하며 서면 미발급 및 기성금을 유보하였고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였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어 발생하는 4,382만원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함.

나. 판례

[2020.4.23, 심결례 미발간]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 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 시작일이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

[공정위 판단]

- 삼성중공업의 계약 시스템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한 사실이 발견 되지 않았으나, 전자 서명 완료일과 최초 공사 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계약서 작성시점에 이미 작업이 시작된 점이 발견되었고 이는 서면 지연 교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서면발급 의무 위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 총 과징금 36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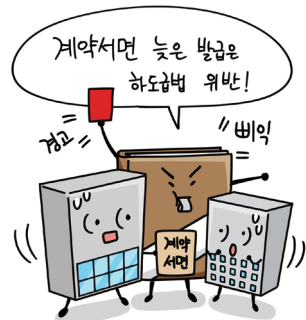
[대림산업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2019.8.30. 2018건하1299]

대림산업은 2015.10.7부터 2017.12.27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 위탁 등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고 4일에서 388일이 지난 이후에 발급하였다.

또한 계약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또는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해당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4~388일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기일,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①항에 위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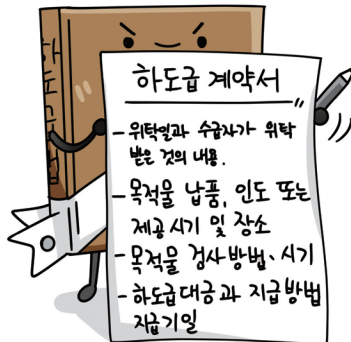
다. FAQ

실제 하도급계약서와는 다른 용도의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 계약은?

- 원칙적으로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면을 작성교부하는 것임
- 따라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 계약서로 인정되며, 하도급법 적용대상 계약으로 봄
- ☞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으로 보지 않음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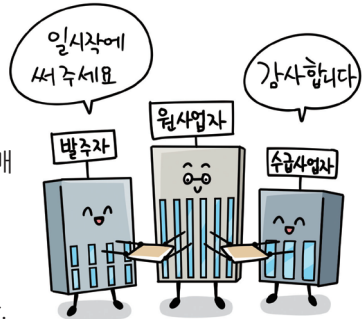
- 하도급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됨
- ☞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의 내용
- (2) 목적물 납품, 인도 또는 제공시기 및 장소
- (3)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 (4) 하도급대금(선금금, 기성금, 하도급대금 조정시 조정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2) 선금금 지급 의무

① 선금금 지급이란?

- 발주자가 위탁하면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착수를 쉽게 하기 위해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노무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러한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② 선금금의 지급 「법 제6조」

- 가.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나.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다. 원사업자가 선금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선금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 ※ 수급사업자가 선금금 지급보증서를 지연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금금의 법정지급 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선금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③ 적용기준

- 가. 선금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금금액 산정기준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액에 원도금금액 대비 하도금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다만, 발주자가 선금금의 사용내역(용도, 지급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다음과 같이 하도금율을 감안한 선금금을 산정 지급한다.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용도와 각 항목별 비율을 지정받아 선금금을 지급 받은 경우 : 그 용도와 항목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업무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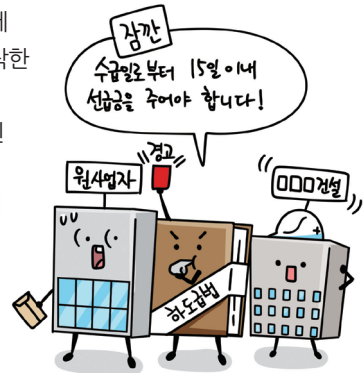
가 능	- 선급금을 공종별, 품목별로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았는데 하도급내용은 공종이나 품목과는 관련이 없어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였으나, 보증서를 지연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선급금 지연 지급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미제출하여 선급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불 가 능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한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혹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경우(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⑤ 사례 및 판례, FAQ

가. 사례

OOO(주)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550,000천원을 지급받고, □□□건설(주)에게 「창원 XXXX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건설위탁하였으나, 지급기한인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주)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금금 45,999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원사업자는 □□□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주)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법 제6조 ①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됨



나. 판례

[대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2018건하1299]

대림산업(주)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광양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고 잔여공사'등 1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금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대림산업(주)는 2018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선금금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을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동법 제6조 ②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FAQ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어음은 만기일에 결제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함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다음 기성금에서 일괄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원사업자가 기성금(비율20%)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
- 또 선급금을 받기 전에 기성이 나갔다면 기성비율 만큼을 제외한 선급금을 지급하면 됨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①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법 제9조」

가. 수급사업자가 납품·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기준

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제3의 공인기관 등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 검사결과와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않음

나) 거대한 건설공사(담·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라.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③ 대량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의 경우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완료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④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제조공정에서 나타난 불량률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적법하게 대금을 공제하기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에 따른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시 계약서에 반품 관련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품 후에도 반품 가능
불 가 능	- 원사업자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할 경우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했으나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타당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 검사기준, 방법 및 시기를 정한 이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는 경우 - 검사기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통상적으로는 합격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통지를 원사업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한 경우 -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법정검사기일 이후에는 반품이나 불량률 이유를 감액하는 경우

⑤ 사례 및 판례

가. 사례

OO종합건설(주)는 (주)△△△건영에게 강원도 원주시 정산지구의 '농업용 저수지제당의 그라우팅공사'를 위탁 후, (주)△△△건영으로부터 同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하도급계약상의 기성금(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인 '감독관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자, 원주지사는 준공검사를 요청 받은 당일 저수지제당의 누수를 측정한 결과 측정시점에서의 누수량은 허용 누수량 범위 내로 치수되었음을 인정하나, 제당의 수위가공사 착공 전 수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후 수위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인 검토의견을 피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이에 피심인은 발주자의 검토의견은 기성금 지급조건인 준공인가가 아님을 이유로 기성금 8천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음

- 하도급법 제9조 ①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 기성금 지급조건인 '감독관 승인'은 그 승인을 위한 검사시점, 검사시 제당의 수위, 허용 누수량 및 그 측정방법 등을 합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지급조건은 하도급법 제9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볼 수 없음
- 피심인은 동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인으로 부터 준공통지를 받은 날(2004년 12월 14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공사는 2004년 12월 24일을 준공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심인이 목적물 인수 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 8천만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2005년 2월 22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짜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당시 이자율 연25%)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례

[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 거래건, 2014서제2223]

피심인(엔에스인터내셔널)은 다운점퍼를 수령한 후 대리점 판매과정에서 오리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제품불만이 제기되자 이후 검사기관에 다운점퍼에 대해 깃솜털 투과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A/S를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공정위 판단]

- 하도급법 제9조 ②항에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운점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하였다.
- 또한, 공정위는 목적물 수령 후 물품관련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루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등 「법 제13조」

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①항」

나.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지급 기일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간주한다. 「법 제13조 ②항」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③항」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 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법 제13조 ④항」

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면 안 된다. 「법 제13조 ⑤항」

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 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⑥항」

사.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⑦항」

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⑧항」

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법 제13조 ⑩항」

② 적용기준

가.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가)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다.

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라)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b.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마)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 기준
 - a.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이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
 - b.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c.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 d.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나. 현금 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 가) 현금비율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 수령액
 - b.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 대금지급액
-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 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 ※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의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간주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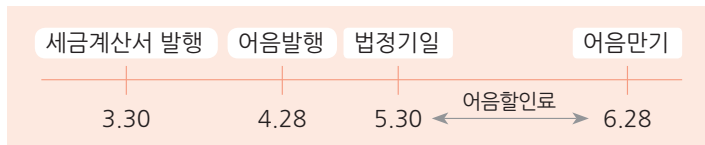
- 가)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3조 ⑨항」
- 고시 어음할인율 : 연 7.5% (2015. 10. 23~)

$$\text{어음할인료} = \text{어음지급액수} \times \text{할인율} \times \text{지연일수} /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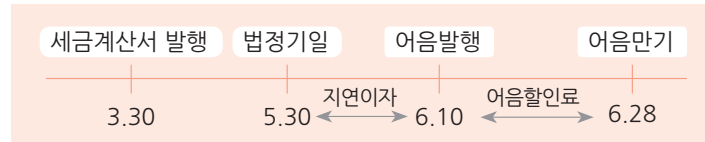
- 나) 지연이자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1.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 고시 지연이율 : 연 15.5% (2015. 7. 1~)

$$\text{지연이자} = \text{지연지급 하도급대금} \times \text{지연이율} \times \text{지연일수} / 365$$

① 법정기일 내 어음발행 시 :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발생



② 법정기일 후 어음발행 시 :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발생



③ 업무시 유의사항

불 가능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잡는 경우 - 하자이행을 목적으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는 경우
------	---

④ 사례 및 판례

가. 사례

OO건설(주)은 XX건설에게 「용인OO지구 B단지 OOOO신축공사 중 토공사」등 4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250,24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하도급법 제13조 ①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O건설(주)은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만기일이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 후 60일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5,13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하도급법 제13조 ⑥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OOO건설(주)는 OO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OO-OO 도로건설 공사 중 구조물공사」 등 2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OOO건설(주)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OOO건설(주)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2,204,000천원을 전액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④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됨
- 시정명령 :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할인료 33,260,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함

대보건설(주)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2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 함.(공정위 보도자료 '20.2.7)

- 공정위는 벌점 4점 및 과징금 93백만원 부과



나. 판례

[대림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건, 2019.8.30]

대림산업은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건설공사'관련 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물문화관 설비 공사' 등 5건의 건설위탁을 한 후 2017.12.12 목적물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493,0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대림산업은 2015.6.16부터 2018.5.31까지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789,97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이 목적물등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법정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89,97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①항, ⑦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A는 C공사 중 일부를 B에게 건설위탁하였고 B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면서도 공사 도중 B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인근가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비가 들었고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위 보상비와 지체상금 등을 합한 액수가 하도급대금을 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판단]

-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5)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①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법 제13조의2」

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 ①항」

나.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13조의2 ②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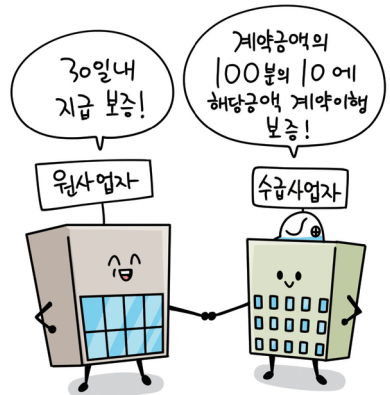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 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 하도급계약 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 ③항」

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법 제13조의2 ④항」

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법 제13조의2 ⑤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 바. 보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법 제13조의2 ⑥항」
 - 가) 원사업자가 금융거래 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나)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다)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그 밖에 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사.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년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다. 「법 제13조의2 ⑦항」
- 아.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3조의2 ⑨항」
- 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법 제13조의2 ⑩항」

② 적용기준

- 가. 종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승계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계 당시의 잔여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 나.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단, 추가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않는다.

라. 하도급대금 보증금액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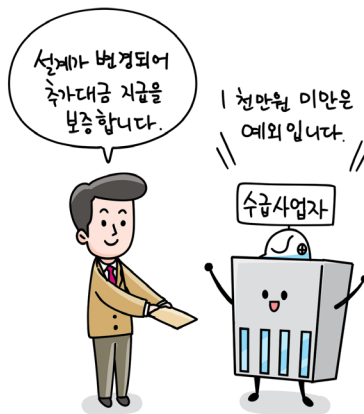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text{계약금액} - \text{선급금}) / \text{공사기간(월수)}] \times 4$$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text{계약금액} - \text{선급금}) / \text{공사기간(월수)}] \times \text{기성금 지급주기(월수)} \times 2$$

③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①항」

가.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하도급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④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대해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불 가 능	-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보증으로 현금을 예치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의 보증 의무 면제를 악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도급법상 탈법행위) - 원사업자 자체발주공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경우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한 상태(ex. 원사업자 부모 시)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는 그 증가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사례

가. 사례

(주)신성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인 원광이앤지(주)에게 삼성SDI 전지동충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음

- 원사업자가 원광이앤지(주)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
- 또한, 자신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위반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①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법 제16조」

- 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법 제16조 ①항」
- 나. ①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②항」
- 다. ①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③항」
- 라. 원사업자가 ①항의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⑧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 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⑥항·⑦항·⑨항 및 ⑩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법 제16조 ④항」

② 적용기준

가. 적용요건

- 가) 제조·건설위탁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했어야 한다.
-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아야 한다.
- 다)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어야 한다.

나. 조정기준

-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하다.

다)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라. 조정금액 지급시기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③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은 시점 이전의 하도급계약 공사에 대하여 조정 기준시점 이후의 하도급 공기, 납기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준 경우 - 하도급계약 시점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지않은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하면서 당해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고 무조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님
불 가 능	-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받고도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 또는 받은 비율 또는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조정받고도 15일을 초과한 날까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조정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하고서도 15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④ 사례 및 판례

가. 사례

OOOO건설㈜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을 받고도 그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건설㈜ 등 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79~109일을 지연하여 조정한 사실이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부분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금액을 추가로 받고도 그 조정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정됨

나. 판례

[에스케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2건하2320]

에스케이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 11. 25., 2011. 10. 6. 및 2011. 12. 8. 총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으므로,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 등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각각 법정기한인 30일을 59일에서 437일 초과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 판단]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 받고도 ○○○○ 주식회사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는 것은 법 제16조 ③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①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법 제16조의2」

가.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사항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2 ①항」

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16조의2 ②항」

다.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의2 ③항」

라. ①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②항에 따른 협의를 조합에 신청한 경우 ①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①항 또는 ③항에 따른 협이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법 제16조의2 ④항」

마.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조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법 제16조의2 ⑤항」

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나 조합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법 제16조의2 ⑦항」

사.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거나,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조합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2 ⑧항」

- ※ 기존 신청권만 가지고 있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협의 결렬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 ※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 규정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② 적용기준

가.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비하도급거래는 제외)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가능하다.

나.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정신청 가능하다.

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의무가 발생함

다. 공사 저가수주에 따른 단순 적자보전 사항은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ㄴ. 따라서 공급원가 변동에 아닌 다른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라.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 ②항」

가)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 10%

나)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다)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7%로 함

라)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마)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조정신청이 가능한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①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에 한정됨(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정신청권이 없음)

③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한 경우(법 위반은 아님)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이 있어 조정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는 경우
불 가 능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협상 요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6. 원사업자 금지사항

의무사항	유의 거래단계	내 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제4조)	계약체결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제11조)	계약이행 단계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제8조)	계약이행 단계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됨
부당반품금지 (제10조)	계약이행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2조의3)	계약이행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제19조, 제20조)	기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위반 행위 등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계약체결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5조)	계약이행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 제12조의2)	계약이행, 대금지급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7조)	대금지급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8조)	기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감액 금지, 부당 위탁취소 금지, 부당반품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보복조치 금지

-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

↳, 「법 제35조 ②항」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경제적 이득,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한다.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법 제4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다. 「법 제4조 ①항」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법 제4조 ②항」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마.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전력비, 수도 광열비 등)과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공용 보험료 등)는 제외한다.

사.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아.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적용기준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 및 가격의 부당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두 요건은 상호보완적으로 부당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낮추어서, 부당성이 적은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게 된다.

나. 행위의 부당성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가)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나) 원사업자가 기망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

다. 가격의 부당성 :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 '낮은 가격'이란 시장 평균가격과의 괴리정도, 원재료 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 하여 당사자들이 취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 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④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하는 경우
불 가 능	- 자재(원부자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동일 실행예산 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 수익계약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서상 직접공사비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⑤ 사례 및 판례, FAQ

가. 사례

동호건설(주)은 경쟁입찰 후 최저가 낙찰자인 A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입찰가 보다 6억 원 낮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함. (공정위 보도자료 '20.2.21)

-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시정명령 및 벌점 2.6점, 과징금 2.6억원 부과



리드건설(주)은 총 공사계약 금액의 3% 이내의 재작업 및 추가작업에 대해 귀책사유와 관련 없이 수급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경쟁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낙찰금액 보다 5.3억 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함. (공정위 보도자료 '20.2.27)

- 공정위는 부당특약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시정명령 및 벌점 5.1점, 과징금 4.6억원 부과

GS건설(주)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공사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하도급업체의 계약 4건의 직접공사비는 총 198억원에 달하였으나, GS건설(주)은 하도급대금을 이보다 11.3억원 낮은 186.7억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음.

- 공정위는 GS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8억 원 부과

나. 판례

[케이티씨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2015-104호, 2013전사0590]
케이티씨건설은 신고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12. 10. 5 신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에 해당하며, 자신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96,221천원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4조 ②항 제6호에 위반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의결 제2008호-233호]

현대엔지니어링은 2006년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Shelter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등 4개 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예가 내 최저금액 입찰업체를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한다”고 현장설명을 한 후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예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의 예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 피심인(현대엔지니어링)은 사전에 재입찰을 고지하였고, 예가기준을 초과한 최저 견적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피심인이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 관리 규정에 “입찰 실시 전에 예가를 확정하여 밀봉하여 보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건과 관련하여 예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정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재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FAQ

정부발주 공사 시 저가 하도급 심사의 대상이 되면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는가?

- 하도급법의 규정은 수의계약 시에는 직접공사비 이하, 경쟁입찰시에는 최저가 투찰금액에 대한 추가 인하협상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급에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하도급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서 '통상적 지급되는 대가' 이하인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함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당초보다 낮게 계약한 경우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되는가?

- 합리적인 원가절감요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할당된 원가절감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여질 수 있음. 통상 장기적인 제조납품의 경우 거래초년도보다 이후에 원가절감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경쟁입찰 시 하도급대금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 최저가 금액이 실행예산보다 초과함을 이유로 네고를 통해 최저가 금액보다 낮게 체결하면 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함이 타당함

물량을 5배 이상 많이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도 무관한지 여부는?

- 하도급단가는 그 물량의 대·소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량이 5배 되는 타사업자의 단가기준으로 계약변경 강요시 위반소지

하도급 입찰견적 조건 및 현장설명 시 사전에 도면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계약 견적을 위한 내역을 전혀 확정하지 않고 이를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고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여부?

- ① 원사업자는 위탁내용의 핵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시 최소한의 내역서나 도면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하도급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견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상관행임 ② 따라서 현장설명 시 불확정한 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그 비용을 현장설명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케 하면, 이는 수량과 금액을 사전에 전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도급 위탁으로 부담소지 ③ 다만, 핵심, 중요한 사항이 아닌 도면이나 내역서상에 반영하기 어려운 미미한 위탁사항을 현장설명시 견적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입찰에 임하였거나, 도면이나 내역서상 문제는 없으나 수급사업자가 단가산출 착오라면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임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도급공사를 수주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가능한가?

- 당초 예상보다 저가의 수주를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액에 해당됨. 원가절감, 협찬금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

물량이 증가하였는데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대금 변동은 없는 것으로 특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당초 계약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증액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당초 입찰시 교부하였던 사양 조건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변경계약 체결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 계약의 주요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 변경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 또한 하도급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감액이 될 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도 발급해 주어야 함

계약 중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경우와 당초 물량 정산을 하기로 하고 정산시 감액하는 경우의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도급계약이 먼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변경 내역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도급 계약 변경 없이 물량 감소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액시 서면발급 의무가 발생하여 정산 협의 전 감액되는 물량과 감액방법,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발주 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에서 하락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 수급사업자의 다른 귀책 사유 없이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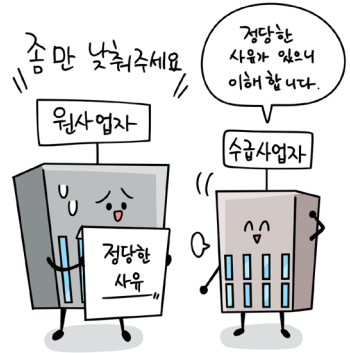
2)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한다.

① 감액금지 「법 제11조」

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법 제11조 ①항」



나.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법하다.

※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 하도급대금을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법 제11조 ③항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2」

라. 감액서면 표준서식 확인 경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하도급법 → 대·중 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별표]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內 별지3

②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 ②항」

- 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나)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당해 합의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행위
- 다)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라)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마)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
- 바)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사)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 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내역과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시공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 가불금, 장비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최종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 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
불 가 능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원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은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달리 감액하는 경우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 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게까지 인하된 새 단가를 소급하는 경우 - 발주자의 발주취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④ 사례 및 FAQ

가. 사례

OO건설산업(주)은 (주)OO건설에게 OOO사관학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2007. 3. 19. 안전약정을 체결하였다.

- 위 약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주)OO건설의 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손상사고(이하 '산재사고')를 원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이하 '산재처리')할 경우 이로 인한 원사업자의 불이익을 (주)OO건설이 보상하기로 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원사업자는 2007. 4. 26.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자신이 산재처리하고 2007. 11. 5. 공사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음
- 건설업에서 각급 공사의 발주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도급대금으로 지급하라고 원사업자가 통상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를 포함한공사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산재사고 발생시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보상하게 한 행위는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부당한 감액행위임

나. FAQ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도급공사를 수주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가능한가?

- 당초 예상보다 저가의 수주를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액에 해당됨. 원가절감, 협찬금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

물량이 증가하였는데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대금 변동은 없는 것으로 특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당초 계약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증액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당초 입찰시 교부하였던 사양 조건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변경계약 체결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 계약의 주요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 변경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 또한 하도급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감액이 될 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도 발급해 주어야 함

계약 중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경우와 당초 물량 정산을 하기로 하고 정산시 감액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도급계약이 먼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의거 하여 15일 이내 변경 내역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도급계약 변경 없이 물량 감소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액시 서면발급 의무가 발생하여 정산협의 전 감액되는 물량과 감액방법,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축로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는 계약서상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실제 축로물량과는 차이가 있음), 당사가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제 축로한 물량으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였을 경우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의거 하도급사업자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 ② 그러나, 물량증가, 단가증액 등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성격이 아닌 하도급계약 자체를 당초 사후정산 물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 자체는 위 하도급법 제16조와 무관할 것이며,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항도 아님

발주 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에서 하락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 수급사업자의 다른 귀책 사유 없이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3)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①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법 제8조」

- 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 「법 제8조 ①항」
- 나.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검사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법 제8조 ②항」
- 다.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한다. 「법 제8조 ③항」

②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가)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다)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라)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된 목적물의 제조 및 건설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내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 하여 보상을 한 경우

③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정해진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연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작업장에서 검사한 결과 기준에 상당히 미달된 하자품인 경우 - 발주서 및 시방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 하여 보상을 한 경우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불 가 능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는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로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하는 경우 - 발주자의 위탁취소 및 위탁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이미 수령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판매가 부진하자 새로 위탁한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무리한 납기를 설정하여 기간내 납기가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④ 사례 및 판례

가. 사례

삼성중공업(주)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따른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과징금 36억 원 및 법인이 검찰에 고발 됨. (공정위 보도자료 '20.4.23)

※ 직권조사의 결과로, 삼성중공업은 최소 7.6점 ~ 최대 11.1점의 벌점 부과가 예상됨 (3년간 누적벌점이 5점 초과시 '공공입찰 참가제한'되며, 10점 초과시 '영업정지' 조치 됨)

-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13년부터 '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함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7년 10개의 선체도장 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선체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하여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 함

-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5년부터 '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2,912건의 추가공사를 위탁시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 없이 금액을 결정했으며,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됨

-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행위

'15년부터 '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 함

나. 판례

[(유)한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2광사2395]

(유)한흥건설은 공군에서 발주한 ‘태풍피해공사’ 중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보완 대책 미제출, 공사 준비 미흡, 공사 관련 업체에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자재·설비 공급 거부, 공사부진으로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등의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공정위 판단]

- 확인 결과 수급사업자는 지정 기일 내 공사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재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고 기상 악화로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공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사 지연은 발주자의 착공 연기 요청 및 원사업자의 선행공사 지연, 기상악화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다. (유)한흥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 ①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4) 부당 반품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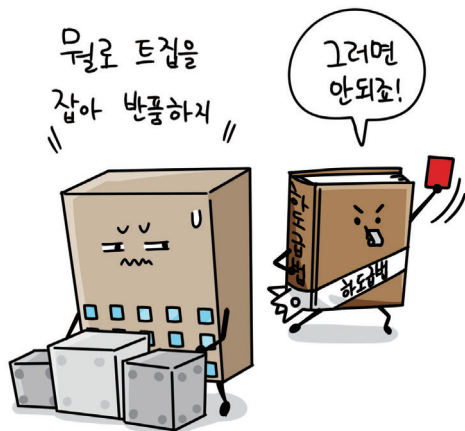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① 부당 반품의 금지「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법 제 10조 ①항」

②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0조 ②항」
 - 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나)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다)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라)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③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납품받은 상품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하자 등이 있어 목적물 수령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인수한 목적물이 주문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 인수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인수 또는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아 자기가 당해 물품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여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불 가 능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불합격을 이유로 이를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④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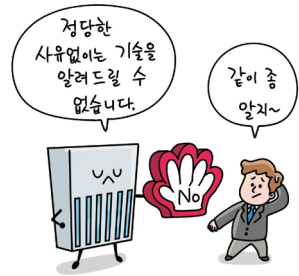
가. 판례

[심결례 미발간]

(주)에스디케스텍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유압기 부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중 발주자의 가공 과정에서 불량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400만 원 상당의 유압기 부품을 반품하였다.

[공정위 판단]

- 이러한 행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0조 ①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시정명령).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한다.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법 제12조의3」

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3 ①항」

나. 원사업자는 ①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 제12조의3 ②항」

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3 ③항」

라.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2조의3 ④항」

② 적용기준

가. 「기술자료」 「법 제2조 ⑮항」

-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 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시공 또는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ex.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③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기재 사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나.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다.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라.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마.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바.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사.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 표준서식 확인 경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하도급법 → 대·중 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별표기]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內 별지4

④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나.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

다.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로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



⑤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 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⑥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4」

가.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나.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라.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마.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바.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
- 사.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방법 및 일자

⑦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가. 거래이전 단계

- 가)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 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나)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나. 거래 단계

- 가)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 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 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바)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사)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다. 거래이후 단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 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⑧ 업무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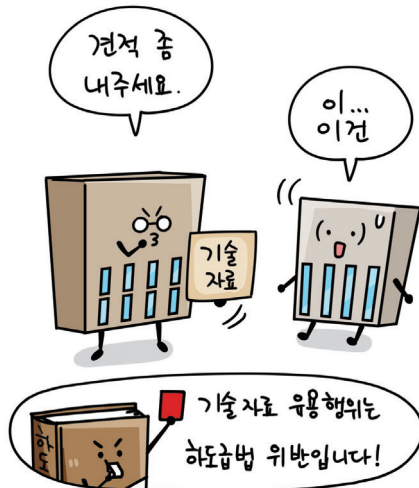
불 가능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구두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요구시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대가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이전 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기술을 공여한 경우 -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그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는 경우
------	---

⑨ 사례 및 판례

가. 사례

공정위는 제작도면은 물론 승인도면도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단순 기술검토 의뢰를 위한 도면의 타사 전달도 기술유행행위로 법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벌점 5.1점)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 (공정위 보도 자료 '20.7.22)

-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업체에게 에어 컴프레서 용접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여 전달받았고 30개의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 등에 관한 382장의 승인도면을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
- 기술자료 타사 유행행위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존 공급처의 용접도면과 승인도를 타협력사에 전달하여 공급가능 여부 및 견적을 의뢰하였으며 이는 기술자료 유행행위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



나. 판례

[현대건설기계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8.5.24 2018제하0053]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제조업체인 ○○전장에게 건설장비용 하네스의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자 2016년 1월 6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총 3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기존 수급사업자들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전장에게 제공하였다. ○○전장은 이를 분석하여 견적가격을 제출하였지만 기존 납품업체의 납품가격보다 높아 적용하기 어려워 ○○전장과 거래는 결렬되었다.

또한 현대건설기계는 자동차 부문의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추세에 맞춰 건설장비에 적용될 리튬이온배터리 충전기를 개발하고자 시제품 개발 입찰을 진행하면서 피심인과 기존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공정위 판단]

- 현대건설기계는 기술자료를 그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원가를 절감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유용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수급사업자의 경험 및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고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바 고발함이 타당하다.

6)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①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보복조치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한다.

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 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행위

다)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나. 업무시 유의사항

불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등록을 제의 혹은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 가격·품질·공기 등에 있어서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기회 제한 또는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
------	--

②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무시 유의사항

불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경우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	--



③ 사례 및 판례

가. 사례

(주)포스코ICT는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 화성이엔티 등 3개 수급사업자와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브라질 CSP 제강 Panel & Box구매' 등 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능보증 유보금 명목으로 'MC/SC/FC 단계별로 각 5%씩 기기대금의 총 15%를 각 단계별 확인서 발급 이후에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함

- 원발주자인 브라질 CSP 제철소와 발주자인 포스코건설 사이에 설정된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대금 지급조건을 도급인인 포스코ICT가 하도급계약에까지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의 이행 및 목적물의 성능보증과는 무관한 SC단계(원발주와 발주자 사이의 지체상금, 하자책임 등의 정산단계 포함) 및 FC단계(종합준공 이후 제철소에서 양산된 결과물의 품질 점검 포함)의 확인서 발급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의 지급과 결부시킨 것이므로 법 제13조가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①항 위반

나. 판례

[주화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건, 2016제하0961]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던 어음할인료 중 ○○○○○등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어음할인료 26,739천원을 2014년 2월 11일, 2014년 2월 21일, 2014년 2월 27일 3회에 걸쳐 피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이 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후 그 시정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통상적인 조치보다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다시 회수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7)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부당한 특약의 금지 「법 제3조의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적용기준

가.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의4 ②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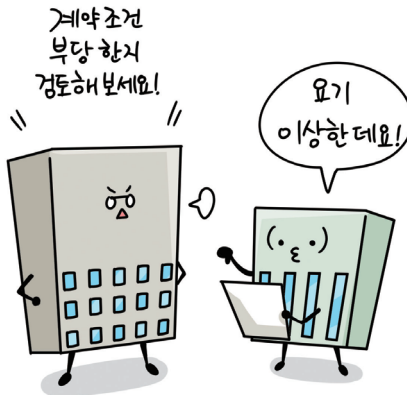
가)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라)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약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a.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 b.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 기간 연 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c.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 한 약정은 제외한다.
 - d.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e.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 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약정
-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당특약’ 약정
- 가)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ex.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ex.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 다)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ex.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라)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ex.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마)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ex.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③ 업무시 유의사항

불 가 능	-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이 부당한 경우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경우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발주자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	--

④ 판례

가. 판례

[대림산업(주)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2016서건2713]

대림산업(주)는 2014년 3월 18일 하남현장(2공구) 관련 토공사 등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을 각각 설정하였다.

- ① 임시 야적장 확보에 따르는 제반비용 및 인·허가 수속 및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② 시공에 관련된 인·허가 수속 및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③ 발주처 및 원사업자가 요청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④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야간 작업, 조기 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견적단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조건, 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장비투입 및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⑥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시험시공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⑦ 지급자재의 하차비용 및 현장 내 관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⑧ 각종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견적에 포함되도록 한 계약조건

[공정위 판단]

- 부당특약은 실제 실현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성능 검사 등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시험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의 계약조건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여 동법 제3조의4에 위반된다.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정거래법, 이하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의 역할

- 1)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 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2)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은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 3) 기업의 임직원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하여야만 회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 1)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45조 ①항 제9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9」

- 부당지원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인력 등의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지원의 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로서 계열·비계열을 구분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정상적으로 현저한 규모로 경제적 급부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규제한다.



① 지원행위의 예시

가.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우량·회사(지원주체)가 부도직전에 있는 계열사(지원객체)에게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저리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행위
 - 나)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 리로 예치하는 경우
 - 다) 부실한 계열사(지원객체)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금리를 제 공하는 행위
 - 라)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원하는 경우
 - 마)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금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 을 제공하는 경우

나. 부당한 자산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상품·용역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기업어음고가매입 : 지원주체가 부실한 계열사(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시장 할인율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로(즉,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 나)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 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특수관계인이나 친족독립 경영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 다) 주식 고가매입 : 지원객체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 라) 전환사채의 고가매입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 마) 부동산 저가매도 : 계열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

다. 부당한 인력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행위)

② 계열사간 거래시 유의사항

가. 계열사에 물량물아주기 관련 사전 검토사항(현저한 규모)

나.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수의계약은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

다.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 가격에 따름.

라. 정상가격이란 당사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함.

마. 적정가격 산정시 내부거래와 외부거래를 비교하여 이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함.

바. 상품·용역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점이 계열사에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함.

※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다면 부당내부거래로 판단

- (1) 본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2)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의 사업활동에 충분한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계열사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3) 본 거래물량만으로 계열사에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 (4)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는지 여부

③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가)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나)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 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 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 (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다.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공정 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①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마.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건,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2)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45조 ①항 제1호~8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1~8」

① 금지 유형

- 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라.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마.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바.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설명

가. 차별적 취급행위

- 부당하게 특정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가격, 수량·품질, 결제조건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원자재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공급 사업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자나 자기의 계열회사에게 다른 회사보다 우선 공급하거나, 가격을 현저히 유리하게 책정하여 경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



나. 경쟁사업자 배제(부당염매)행위

가) 부당염매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규제이유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방해하여 독점적 지위를 취득한 후, 다시 높은 가격으로 손실을 보상하려는 의도 또는 경쟁자의 고객을 탈취하려는 의도로 단행하는 가격인하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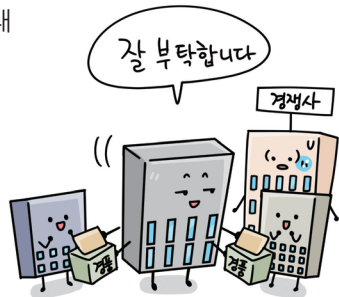
다) 가격경쟁 그 자체는 사업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쟁수단으로, 사업자가 신기술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양질의 제품을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① 계속 거래상의 부당염매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기타의 부당염매로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규제

라) 시장가격으로 계속 공급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 경우나 상대방 사업자의 덤핑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염매행위인 경우에는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원 입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원 입찰이라도 무조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독점적 지위를 유지·형성·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판단

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가) 사업자가 가능한 한 많은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마케팅 활동의 일부로서 인정되지만, 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사례에는 현상·경품·리베이트 제공에



의한 고객유인 등이 있는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제공되는 이익의 크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허용될 정도의 것인가 또는 고객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방해할 정도의 것인가로 판단

- 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다한 경품류의 제공은 소비자의 가격·품질에 의거한 구매선택을 저해하여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공정한 경쟁 저해

라. 우월적 지위의 남용

- 판매목표 강제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사업자가 자신의 특약점, 전속대리점 등의 유통망에 대해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특약관계 혹은 대리점 계약, 상품공급 계약의 해지 기타 인센티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등)

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바. 사업활동 방해행위

-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경쟁사업자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사업자 자기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규제대상



3)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시정조치 「법 제49조」

-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및 벌칙 「법 제50조 ②항 및 법 제124조 ①항 제10호, 법 제125조 제4호」

구분	과징금
거래거절 ~ 사업활동 방해 「법 제45조 ①항 제1호~8호」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매출액 없는 경우 10억 이내)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포함) 「법 제45조 ①항 제9호」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 없는 경우 40억 이내)

구분	벌칙
부당한 고객 유인 및 강제,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03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 I. 개요
- II. 심판기능으로서의 공정위
- III. 심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 IV. 사건처리 절차
- V.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 VI. 불복절차
- VII. 사전심사 청구제도
- VIII. 동의명령제도



I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II

심판기능
으로서의
공정위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58조, 제64조 ①항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58조, 제64조 ②항
소관 사항	- 법규 등의 제·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 「공정거래법」 제59조 ①항	- 일반사건 - 승인·인정·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III

심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1. 심결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을 일컫는다.

2. 심사관

- 1)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2) 이러한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된다.
- 3) 물론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게 된다.

3. 피심인

-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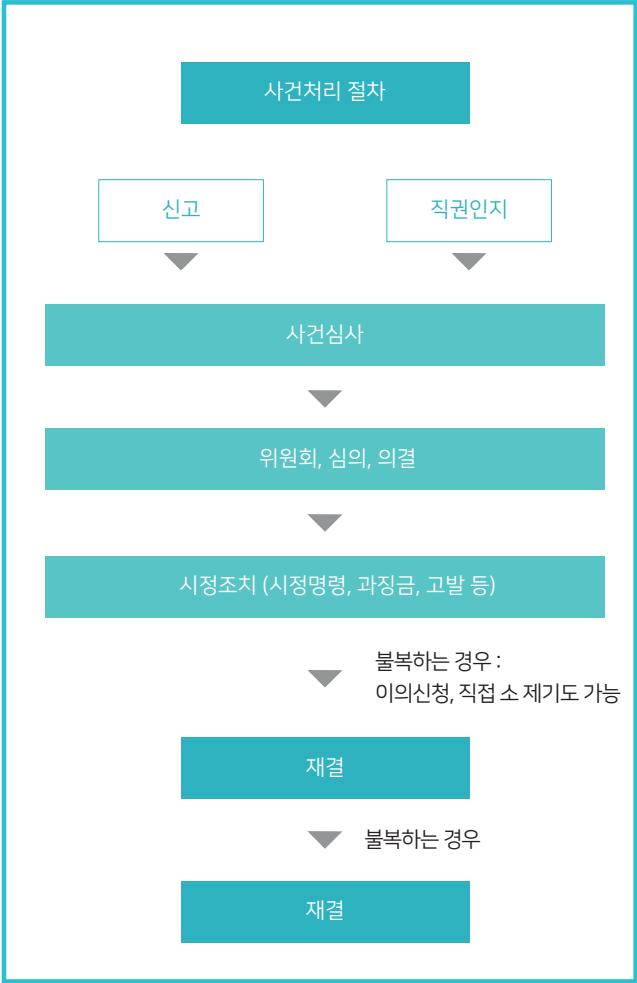
4. 이의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피심인이 당해 처분에 불복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IV

사건처리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1. 인지단계

- 1)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가능 「공정거래법 80조」
- 2) 위반혐의는 직권인지가 원칙이고,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
- 3) 신고 접수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2. 조사·심사 단계

- 1)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
- 2)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
- 3)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

3. 심의·의결 단계

- 1)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
- 2)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합의하는 과정 「공정거래법 65조」

4. 의결 결과 통지

-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 「공정거래법 68조」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다.

V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1. 사전 의견청취절차 제도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안건의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정식심의에 앞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진행 하에 주요 쟁점에 대한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2. 심의 속개제

-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한번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심의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심의분리제

- 공동행위와 같은 위반행위 건에 대한 심의시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과 별도로 심의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

4. 출석 시차제

- 1) 해당 안건의 심의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의 시작 시간까지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 등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당 안건의 심의 시간을 예측하여 그 시간에 맞도록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제도
- 2) 기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보고서 첨부자료 공개, 프리젠테이션 시설의 설치·운영, 외국인들의 심의 참가시 편의제공을 위한 통역부스 설치 허용 등 다양한 심결절차 응용

VI

불복절차

1.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 1) 공정위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공정거래법 제96조」
- 2)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 「공정거래법 제97조」

2. 행정소송

- 1)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 2)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VII

사전심사 청구제도

1.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의견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다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 자료부족으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확정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하다.

VIII

동의명령제도

1. 동의명령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2.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기업 판정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피규제자의 동의를 얻어 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비자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든 사안에 따라서는 통상의 시정조치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가격 인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04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I. 하도급법

II. 공정거래법
(부당한 지원 및 불공정거래행위)



I

개요

No.	의무/ 금지사항	점검내용	확인	
			○	X
1	서면교부	-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작업지시서 등을 작업 시작 전에 교부한다. ① 작업내용 ② 완료 시기 및 장소 ③ 검사 방법 및 시기 ④ 대금 지급 방법 및 기일 ⑤ 원재료 제공시 수량·제공일·대가지급 방법 및 기일, ⑥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 발급 요구를 서면 통보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회신한다.		
2	부당특약 금지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한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 부당유형 ①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약정 - 부당유형 ② : 원사업자 부담의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 부당유형 ③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 부당유형 ④ : 원사업자 책임의 인허가, 환경관리,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항, 입찰시 예측이 불가한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 수의계약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 도급계약상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합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물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물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No.	의무/ 금지사항	점검내용	확인	
			○	X
5	선급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 선급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한다.		
		-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6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및 수령 거부 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위탁 임의 취소,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 거부 등을 하지 않는다.		
7	검사 기준, 방법, 시기	-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8	부당반품 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목적물 반품을 하지 않는다.		
9	감액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감액을 하지 않는다.		
10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 물품, 용역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11	기술자료 제공 요구금지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요구 또는 유용을 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서를 사전에 발급한다. ① 요구목적, ② 권리귀속 관계, ③ 대가 및 지급방법, ④ 명칭 및 범위, ⑤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⑥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성		

11	기술자료 제공 요구금지 등	- 기술자료 제공시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법정기재사항이 기재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① 명칭 및 범위, ② 사용기간, ③ 기술자료 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 비밀유지의무, ⑤ 목적 외 사용금지, ⑥ 위반에 따른 배상, ⑦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12	하도급대금의 지급	- 목적물수령일로부터 또는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다. -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1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설계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계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설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변경을 실시한다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14	공급원가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다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시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15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16	보복조치 금지	- 원사업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수주기회 제한 등)을 가하지 않는다.		
17	탈법행위 금지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II

공정거래법 (부당한 지원 및 불공정거래행위)

No.	위반유형	점검내용	확인	
			○	X
1	부당자금 지원	- 특수관계인(계열사 등) 등에 대하여 가자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 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 는 거래하는가? (계열회사에 저리로 자금 대여하는 행위, 대여금 및 대여금 이자 미회수, 지연회수 행위 등)		
2	부당자산 지원	-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 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타 사업자 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 매입 할인율보 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행위 등)		
3	부당인력 지원	-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 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 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회사 가 부담하는 경우 등)		
4	거래단계 추가	-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 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 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계열회사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지 않는가?		

No.	위반유형	점검내용	확인	
			○	X
5	부당 거래거절	-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 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는가?		
6	가격차별	- 거래가격의 격차설정에 객관적인 기준없이 거래지역/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가?		
7	거래조건 차별	-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해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가?		
8	계열사를 위한 차별취급	- 계열사에 대해 수량, 가격,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유리한 취급을 하는가?		
9	부당염매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총판매원가 이하로 제품을 공급하는가?		
10	부당 고가매입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용역 등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대가로 구입하는가?		
11	부당 고객유인	-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판매점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거나 객관적 지급 기준 없는 경품 또는 리베이트 등)을 제공 또는 제시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가?		
12	거래 강제	-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공급사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가? (계열사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회사에 한하여 거래하는 행위, 회사 납품업체에게 계열회사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13	구입 강제	- 고객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가? (거래처에 대해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토록 하는 경우 등)		

No.	위반유형	점검내용	확인	
			○	×
14	이익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가?		
15	판매목표 강제	- 판매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가?		
16	불이익 제공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가?		
17	경영 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의 선임이나 해임시 자기의 지시,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가?		
18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이나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어길시 제품 공급 중단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가?		
19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가?		

별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및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 경쟁법의 준수를 위해 운영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포스코A&C의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② “경쟁법”은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보호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 ③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 ④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라 한다.)”은 경쟁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시스템과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⑥ “자율준수협의회”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부서의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감독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⑦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이란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하는 일원 중 하나로, 소속부서의 CP 운영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지휘감독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⑧ “공정거래 실천리더”란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하는 일원 중 하나로, 소속부서의 경쟁법 준수 점검 및 공정거래 관련 상담과 자문을 하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⑨ “담당부서”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별로 자체점검을 실시,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⑩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아래에서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임명과 해임)

- ① 이사회에서 선임한 감사가 자율준수관리자가 되며,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을 겸임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경쟁법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임직원과 사내 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 조 제3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CP 주관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새로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CP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7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CP의 운영
2. CP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CP 실태에 대한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
4.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 후속 조치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CP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CP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8. CP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을 사장 및 경영층에게 보고
9.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0.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독립성 보장)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 관리자가 본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② 회사는 본 지침 및 경쟁법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2 절 CP 운영조직

제10조(CP 주관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정도경영실에서 주관한다.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제11조(CP 주관부서의 업무) CP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2.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 작성,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시행
3. CP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 운영효과성 평가
4. 경쟁법과 연관된 사내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
5. 경쟁법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
6. 경쟁법 및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
7.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
8. 공정거래 관련 반기 1회 모니터링 및 점검
9. 공정거래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발

제 3 절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역할

제12조(구성 및 선임)

-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구성한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회의의 위원은 각 실의 담당부서장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 ③ CP 주관부서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하에 담당부서별로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선임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 ⑤ CP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제13조(운영 및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단위로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구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자문
3.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
4. 위원별 담당부분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5. 각 위원별 담당부서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6.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제14조(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역할)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 지원
2.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지휘감독하여 소속부서 CP 운영
3. 부서의 CP 교육 참여 독려로 소속부서의 경쟁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사전 법 위반 예방
4. 부서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 및 CP 운영 개선사항의 발굴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2. 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
3. 부서의 경쟁법 준수 점검 및 그 결과를 CP 주관부서에 통보
4. 부서의 경쟁법 위반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에 통보

제 4 절 임직원

제15조(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 주관 부서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CP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 5 절 사 장

제16조(역할)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의 경쟁법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 3 장 CP의 운영

제 1 절 자율준수 의지선언

제17조(선언목적)

사장은 임직원이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18조(선언방법)

사장의 자율준수 의지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제 2 절 CP의 운영

제19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경쟁법 및 회사의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편람을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개정 검토(매월) 및 개정(반기 1회)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경쟁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교육
 2. 사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한 교육
 3.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4.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5. 대면, 온라인, 동영상, 업무시스템 게시 및 팝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 ②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강 현황을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토록 한다.
- ③ CP 주관부서로부터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임직원 중 경쟁법을 위반한 자는 내부감사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중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④ CP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CP 주관부서는 교육 후 피교육자의 이해도, 만족도, V.O.C, 참석률 등의 파악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⑥ 교육을 하는 사외강사의 자격은 법무법인, 전문기관 등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으로 하며, 사내강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시공관리, 제작관리,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
 2. CP 주관부서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2급 이상 자격 소지
 3. 사외 공정거래 전문교육기관 강의 수료 1회 이상

제21조(위험성평가)

CP 주관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경쟁법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합한 통제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① 위험성평가는 반기 1회 실시하고, 리스크 등급은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한다. 리스크 등급이 ‘중’ 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회피, 경감 또는 제거한다.

제22조(모니터링 및 점검)

- ① CP 주관부서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 상시 공정거래 모니터

링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및 점검 활동에 수검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 ③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경영층에 보고 하며,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점검을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정한다.
 - 1. 시공관리, 제작관리,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2.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아니한 자
 - 3.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적격자로 판단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신고시스템의 운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신고시스템은 기명신고 뿐만 아니라 익명신고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익명신고는 철저 히 익명성을 보장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25조(운영성과 평가)

- ①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기 1회 평가하여 경영층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6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CP의 운용상황을 알 수 있게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3 절 공정거래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포상

제27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인사노무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기타)

- ①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지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은 연 1회 개정하며, 경쟁법 등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개정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